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20년 1월 9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 과장 송태복(044-201-2331), 사무관 도재규(2346) / 제공일 : 1월 8일(총 5매)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주 요 내 용 》

- ◆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번호 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 실시
 - (기간) 2020. 1. 9. ~ 1. 23.(2주간)
 - (대상)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 판매점 등의 축산물 유통업체*
 - *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등
 - (내용)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특별단속
 - * 축산물에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관리 실태 등
 - (단속기관)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합동단속 실시
- ◆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 및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점검과 계도·홍보 병행 추진
 - * 대규모 식품접객업자(700㎡ 이상), 학교 등 집단 급식소 및 통신판매업소의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공개(표시·게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

- 금번 특별단속은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 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 처분(「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 ‘20.1.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됨

-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점검과 함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한 대규모 식품점객업자(700㎡ 이상), 학교 등 집단 급식소 및 통신판매업소의 이력번호 공개(표시·게시)

□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하면서,

○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임1

축산물 이력제 개요

- (정의)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 (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대상) 소·돼지 사육농가, 도축업자, 축산물유통업자 등
- 국내산 소·쇠고기('08.12월~), 수입산 쇠고기('10.12월~), 국내산 돼지·돼지고기('14.12월~), 수입산 돼지고기('18.12월~), 국내산 닭·오리·계란('20.1월~)
 - * 국내산 닭·오리·계란의 이력제의 유통단계 단속은 '20년 하반기(7.1일)부터 시행
- (내용)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각 단계별로 신고·기록·관리하고 개체 또는 축산물(포장 최소단위)에 표시

사육단계(농가)	도축단계(도축장)	포장처리단계(업체)	판매단계(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신고 • 귀표 부착 • 이동 신고 • 폐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신고 • 이력라벨지 부착 • 도축처리 결과 신고 • DNA 시료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육 또는 포장지 이력번호 표시 • 포장처리, 판매·반출 실적 관리 및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지 식육판매 표지판 등에 이력번호 표시·게시 • 거래내역서 기록 및 관리·보관



불임2**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이상
제32조 (벌칙)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법 제17조제1항, 제2항)	별 칙(500만원 이하)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70	140	280	500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70	140	280	500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3항)	70	140	280	500
제34조 (과태료)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	100	200	400	5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 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	100	200	400	500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법 제26조)	50	100	200	400